AUTODESK
Clean Company 양해각서 (MOU)

제 1 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이하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에 대한 Clean Company 인증과 그에 따른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본 양해각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기업"이라 함은 오토데스크에 대하여 Clean Company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인증"이라 함은 오토데스크가 본 양해각서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신청기업을 Clean Company 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 기업"이라 함은 오토데스크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해당 인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의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심사)

1. 오토데스크는 신청 기업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기준은 아래 각호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오토데스크가 정하기로 하며, 오토데스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 기업은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사용하는 인원

   나. 신청기업의 조직

   다. 오토데스크의 제품 사용 및 관리계획

   라. 오토데스크의 제품 구입에 관한 연간 이행계획

   마. 신청기업에 대한 실사자료

   바. 신청기업의 의견

3. 신청 당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도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오토데스크는 위 계획서상 약정기간 내에 신청기업이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Clean Company 로 인증할 수 있다.

4. 인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신청기업은, 오토데스크로부터 인증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Subscription 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생성되는 라이센스 정보, 기타 정보는 추후 관련 기관에 제출되는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제 4 조 (인증)

1. 오토데스크는 심사를 통과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Clean Company 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한다.

2. 오토데스크는 인증 기업에 대하여 인증패 또는 인증서를 증정한다.

제 5 조 (인증에 따른 혜택과 의무)

1. 오토데스크는 인증기간 동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인증기업을 고소하지 아니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 신청기업 또는 인증기업은 제 1 항에 따른 혜택을 이용하여 인증기간 동안 오토데스크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다.

제 6 조 (인증기간)

1. 인증의 유효기간은 오토데스크로부터 Clean Company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016]년[5]월 [10]일 까지로 한다.

2. 인증기업은 인증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인증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신청을 받은 오토데스크는 갱신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 7 조 (효력의 상실)

1. 다음의 경우 인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중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Clean Company 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오토데스크가 인증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나. 인증기업이 인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오토데스크로부터 취득한 기업정보, 영업기밀, 기타 업무자료를 제 3 자에게 유출하여 오토데스크가 인증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다.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 8 조 제 2 항에 따른 감사일정에 관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라. 제 8 조 제 3 항에 따른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오토데스크가 인증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마. 인증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갱신신청결과 인증이 거부된 경우

바. 인증기업과 오토데스크가 인증 종료를 상호합의하는 경우

사. 인증기업이 제 12 조에 따라 제출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행 계획서상의 약정기간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아. 인증기업이 제 5 조 제 2 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에 따라 인증기업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제 1 항 가.호 내지 나.호, 라.호에 따라 인증 취소를 통보받은 인증 기업은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감사)

1. 인증 기업은 분기별로 오토데스크로부터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오토데스크의 추가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현황에 대한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감사는 오토데스크의 감사요청을 인증 기업이 수령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진행한다.

3. 오토데스크는 감사결과 인증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적사항을 인증기업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인증의 유지를 위하여 위 지적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감사비용 등)

1. 감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오토데스크 또는 오토데스크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감사대리인")가 부담한다.

2. 오토데스크는 감사대리인으로 하여금 감사 후 보고서를 인증기업과 오토데스크에 전달하도록 조치한다.

제 10 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위반 관련)

1. 인증기간 이전에 또는 이후에 사법기관이 적발하여 수사한 인증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인증기간 동안에 인증기업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사업기관에 적발된 경우 이를 직접 오토데스크의 법무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관련)

1. 본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증기업이 형사소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오토데스크는 본 양해각서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본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증기업이 형사소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토데스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해지)

1. 이 양해각서의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인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오토데스크는 이 양해각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제 13 조 (기타)

1. 이 양해각서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고, 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인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을 유효하게 구속하며, 이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체결된 다른 약정이나 합의에 우선하는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3.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에 의해 인정되는 어떠한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는 구매확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어 2016년 5월 10일까지 12개월간 그 효력이 유지된다.

2015년 5월 27일

(주) 오토데스크 코리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7층
아셈타워 17층

TIMO KIM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대표이사 송성각 (인)